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II: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인권침해 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Sport II : Focused on the Remedies and Protectio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ask Force on Human Rights in Sports’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김현수 前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 홍덕기**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

Kim, Hyunsu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Hong, Deock Ki Gyeongsang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는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분석을 위해 기획된 두 편의 연구물 시리즈 중 그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의 인권침해 구제와 보호 업무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조단에 진정된 인권침해 사건의 연도별 건수는 126건(2019년), 110건(2020년), 87건(2021년)으로 총 319건 중 279건이 처리되었다. 둘째, 특조단의 사건조사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건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결정(7건), 침해구제 제2 위원회 결정(12건), 아동권리위원회 결정(17건), 차별시정위원회 결정(3건),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2건)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조단은 스포츠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상제작, 카드뉴스 및 스포츠인권선서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더불어,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캠프, 인권교육,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특조단의 구제 및 보호 업무의 성과로는 ‘학생선수 맞춤형 진정 및 상담 창구 운영’, ‘심리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피해구제 체계 구축’,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스포츠인권 의식 증진 캠페인’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계로는 조직의 안정성 미흡이 제기되었다. 스포츠인권의 구제 및 보호 증진을 위한 과제로는 ‘범국가적 조직의 상설화’, ‘구제활동의 법적 근거 강화’,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스포츠인권, 구제, 보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medies and protectio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ask Force on Human Rights in Sports’ establish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279 out of 319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sports were dealt with. Seco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sports was assigned to ‘the committee of the whole house and the standing committee’(7 cases), ‘the 2nd violation remedies committee’(12 cases), ‘the children’s rights committee’(17 cases),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committee’(3 cases), and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committee for the disabled’(2 cases). Third, the Special Investigation Task Force on Human Rights in Sports executed various human rights awareness enhancement programs and promotions in sports arena including human rights in sports education, symposium and training camp. Based on the result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sports are provided.

Key word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pecial investigation task force on human rights in sports, Human rights in sport, Remedies, Protection

* 본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2021)에서 발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백서(2019-2021)’의 일부 내용을 벌췌하여 수정 및 보완함

** deockkikhong@gnu.ac.kr

서론

197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체육 정책을 통해 공고해진 한국의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은 우수한 선수 육성 및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과로 이어졌다(류태호, 2005).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숙과 국민의 인권 의식 신장이 맞물리며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평가는 양립하고 있다(김현수, 2021; 홍덕기, 2021). 단기간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팔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결과의 이면에는 승리지상주의와 이로 인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더불어 국가의 스포츠 정책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져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는 최근 들어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류태호, 2005; 안민석, 홍덕기, 2019; 임용석, 홍덕기, 2021). 따라서, 학습권 침해(김현수, 박성주, 2020), 폭력(홍덕기, 류태호, 2007), 성폭력(김현수, 2020) 등을 중심으로 20여 년 가까이 문제점과 대응책들이 제시되어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 등의 국가적 대책, 대한체육회의 자구적 대응책,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방안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측면도 있다(김현수, 홍덕기, 2022: 324).” 하지만,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나 인권 교육 등 처방 중심의 접근방식과 더불어 엘리트스포츠 현장의 실천 의지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문제는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분야 내부적으로도 인권 침해 문제 답보 상황의 원인을 문화적 지체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엘리트스포츠 현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와 같은 표어의 사용, ‘스포츠인권의 날’ 정기적 개최, ‘체육인 인권 강화

및 공정성 제고’를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확대 차원에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스포츠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스포츠계 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문체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학생선수 대회 참가 관련 제도 보완 개선’ 발표에 대한 적극 지지 보도자료(대한체육회, 2022년 8월 29일)를 살펴보면, 그 문제의식은 곧 엘리트스포츠 분야가 태생적으로 작동해온 승리지상주의와 결과주의적 관행, 개인주의적 태도 문제에 결부되면서 인권의 문제가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관련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엘리트스포츠 경기력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과 인권 보호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현장과 언론은 이를 한쪽 편의 이익과 다른 편의 손해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왔다. 따라서,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를 도모하는 당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해가 다른 집단 간의 헤게모니(hegemony) 생활전과 같은 갈등 국면으로 보이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의 스포츠 정책과 제도는 모든 사람의 스포츠를 즐길 권리 등 보편적인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부 엘리트 체육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에 귀속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스포츠 분야의 부조리에 대한 개혁의 당위마저 의심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김현수, 2021).

이후 스포츠 성과와 인권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나타난 스포츠 분야의 굵직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2019년에 이르러 유명 스케이트 선수의 미투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분야 자정작용에 대한 기대를 접고,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직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과 문체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고 할 수 있다. 혁신위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권고문을 발표¹⁾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자 했다(홍덕기, 2020). 한편, 특조단은 범국가적 스포츠인권 대응조직으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1년간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해 매년 운영연장을 통해 2023년 2월 운영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물론 두 조직은 그 조직의 구성이나 범위, 운영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국가 스포츠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 그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특조단은 과거 정부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가장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대응조직으로서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인력을 구성하며, 국회가 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출범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조직이라는 점(김현수, 홍덕기, 2022: 325)”에서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308호에 따라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조사와 연구 및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실행지침 수립, 그 밖에 인권보장·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국가인권위원회, 2021b)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드러난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의 활동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여 추후 스포츠인권 대응조직의 역할을 정초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총 두 편의 연구물로 이루어진 시리즈 중 그 두 번째 연구물로서 첫 번째는 특조단의 구성, 인권침해 실태 진단, 정책 권고에 대해 분석하고 그 성과 및 과제(김현수, 홍덕기, 2022)에 대해서 다루었다. 본 연구는 2021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백서 2019-2021」에 나타난 특조단에 할당된 또 다른 기능인 인권침해의 ‘구제와 보호’에 중점을 두고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성과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구제와 보호’ 관련 업무는 진정 사건 및 직권조사, 상담 및 피해자 지원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²⁾ 본 연구에서 이 기능들에 대해 다룬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독립 기구로서 갖는 권한과 의사결정 절차 등 추후 스포츠인권 보호 기구들이 갖추어 나가야 할 지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건의 진정 및 조사절차

1 사건의 진정

특조단은 지난 3년의 운영과정에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스포츠 분야 인권상황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4월 19일부터 8월 13일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제1차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권고’, 제2차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 제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 제4차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제5차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제6차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제7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권고’ 등을 발표하였다. 혁신위 권고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홍덕기(2020)가 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체육의 방향 설정과 과제」를 참조.

2) 특조단은 1단 2팀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아래 총괄기획팀, 특별조사팀으로 편성되었는데, 총괄기획팀은 본문에 언급된 업무를 담당했고, 특별조사팀은 ‘스포츠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태조사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 기획 및 실행, 법령·정책·관행의 개선, 대외간담회, 공청회 등 구성과 실시,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2021b). 특별조사팀의 업무와 성과에 대한 내용은 김현수, 홍덕기(2022)가 쓴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I: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진단과 정책을 중심으로」를 참조.

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중 사건의 진정과 관련하여 특조단은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진정 절차에 있어서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전화(133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직접 방문 등 기존의 방법과 더불어 별도의 온라인 진정 창구를 운영하였다. 즉, 특조단 진정 전용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상담 및 진정에 대응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학생선수들이 피해 상담이나 사건 진정 시 2차 피해를 극히 우려한다는 점에서 익명 채팅 상담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자유시간이 많지 않고, 여러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담이나 진정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한정된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당직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학생선수들이 주말 휴식 시간을 이용한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주말 상담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진정 창구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출범부터 2021년 12월까지 SNS 상담방 친구맺기에 1,30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SNS 채팅방 참가자 542명을 상담한 결과, 상당수는 정식 사건으로 진정하여 조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2019년 126건, 2020년 110건, 2021년 12월 기준, 87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연도별로 각 48건(2019년), 99건(2020년), 132건(2021년)을 처리하였다. 종합하면, 특조단의 인권침해 진정 누적 접수 건수 319건 중 279건이 처리된 것이다. 이 중 인용된 누적 건수는 구제조치 권고 25건, 징계권고 14건, 고발 1건, 의견표명 4건, 합의종결 1건으로 총 45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21a).

2. 사건의 조사

앞선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조단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위의 업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대상을 ‘스포츠’로 넓혀 인권위의 조사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규정(김현수, 홍덕기, 2022:

325)”되어 있음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된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특조단으로 배당되는 사건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특조단으로 진정된 사건의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진정의 각하,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조사 목적의 한계, 조사의 방법, 질문·검사권, 위원의 제척, 진정의 기각, 합의의 권리,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구제 조치 등의 권리, 고발 및 징계 권리,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요청, 긴급구제 조치의 권리,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처리 결과 등의 공개 등 법에 명시된 내용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 존중, 성실의 의무’를 명시한 제3조(조사처리의 원칙), ‘진정인의 심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사건의 처리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제4조(사건처리기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도록 한 제2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39조(제보자 등의 보호), 제44조(권고 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건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23조(조사 종료 시의 소위원회 상정)에 따라 사건조사가 종료된 이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23조에 나타난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보고서 필수 기재 사항>

진정의 개요, 조사의 방법과 경과, 사실 또는 법률 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사건에 대한 조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 결정문 작성 여부 등

<조사결과 보고서 추가 기재 사항>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가능성,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법에 의하여 의뢰한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 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위원회의 확인 요구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회답한 내용, 법에 의한 고발 또는 징계 권고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법에 의한 법률구조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긴급 구제 조치를 하거나 권고한 경우 그 내용, 관련 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그 내용, 시설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해당 구금·보호시설이 한 조치, 그 밖에 진정 사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견 또는 조사 방법·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사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고 및 심의 절차를 거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35조(결정문의 작성)에 따라 “소위원회 등은 진정 사건에 관하여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하 또는 이송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그리고 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제2항의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사건처리 결과를 기한 내에 통지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사건처리 결과 통보 기한>

1.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2.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2항에 따라 권고를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4.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함과 동시에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과 구제

특조단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은 사건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각 전문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따라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조단이 조사한 사안 중 대규모 실태조사나 직권 조사에 기반한 정책 권고 사안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나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한편, 개별 진정 사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사안의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각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쳤다. 특조단이 조사하여 인용된 사건의 결정형태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결정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사건은 위원회 내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등에 의한 정책 권고를 다루었다. 하지만 특조단 운영기간 동안 인권위가 결정한 정책 권고들이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고, 개별사건의 결정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존재했다.

권고의 대상은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인권 보호 정책을 다루고 있어 그 권고 대상은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중앙정부 부처 수장들과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거나 시설관리의 주체인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시도교육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장 등 지방정부 부처 및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체육을 실질적으로 관掌하는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해당 경기단체장들도 권고의 대상이었다. 특히, 2020년 새롭게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센터이사장도 권고의 대상이 되었다.³⁾

3) 각 권고의 내용은 김현수, 홍덕기(2022)가 쓴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I: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진단과 정책을 중

표 1.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총 7건)

결정일자	제목	권고대상
200706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전원위)	대통령,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20062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문체부, 여가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200623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교육부, 문체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
201210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
210218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교육부, 지방자체단체(22개)
210408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보건복지부,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211125	여성전문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교육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결정일자 표기: YYMMDD)

2.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

특조단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성인 선수, 지도자, 행정가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구제 제2위원회⁴⁾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는 주로 스포츠 분야의 오래되고, 부조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들이 다수였다. 특조단에서는 이들 진정들을 체육계의 관행으로 보고, 직권조사로 확대 분석하여 정책권고안(국가인권위원회, 2020. 7. 6.)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성인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징계나 특별인권교육 등에 대한 권고 조치가

심으로」 332-336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 조사에 대한 결정문을 참조.

4)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검찰이나 경찰 등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위원회로 스포츠 관련 사건이 없었음.

표 2.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사항(총 12건)

결정일자	제목	결정	결정내용
190619	시청 운동부의 폭행 전력 지도자·재임용 관련 인권침해 등	권고	특별인권교육, 인사조치, 제도개선, 직무(인권)교육
190619	체육대학의 학생 생활관 점검 등에서 사생활 침해	권고	제도개선 인권교육
190808	체육단체 임원의 폭언과 부당한 정계 처리에 따른 인권침해	권고	제도개선 직무(인권) 교육
200331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 미흡	권고	징계, 제도개선 직무(인권) 교육
200331	대학교수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등	권고	징계 직무교육
200429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특별인권교육, 인권교육, 제도개선
200813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권고	인권교육
201117	국가대표 ○○○○ 선수의 사망 관련 의견 표명	의견 표명	제도개선
201223	체육지도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학교의 조치 미흡	권고	주의, 인권교육
201223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권고	제도개선
210127	학교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권고 (정책)	제도개선
211008	대학의 집단행위 금지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제도개선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결정일자 표기: YYMMDD)

이루어졌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인권교육과 제도 개선 등이 검토되었다. 특히, 기존 체육계의 오랜 관행들에 대해 관심적으로 반응한 2차 행동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건들은 인권교육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구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조사 결과가 인권침해로 인용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각급 학교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단체 3건,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2건이었다. 특히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대학의 경우,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학내의 인식이나 관행뿐만 아니라 일부 학칙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존재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관련 사건을 종합하여 ‘학교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21. 1. 27.)’로 발전하여 그 대상을 전국 체육대학 규모의 학교들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김현수, 홍덕기, 2022). 한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진정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지도자-선수, 선배-후배 간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스포츠 분야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관련 진술에서도 인권침해 사실을 당당하게 진술하는 등 조사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또한 사건처리 시 관련 기관의 미숙한 처리 절차로 인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고, 상호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주로 나타났다.

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특조단으로 접수된 사건 대상이 학생선수인 경우는 아동권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을 받았다. 인용된 사건은 총 17건이었는데 구체 권고가 14건, 의견표명이 3건이었다. 결정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 징계, 경고 등의 인사조치, 제도개선 등의 시정조치, 직무교육, 인권교육, 특별인권교육 등의 예방조치 등이 권고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사건의 경우는 사건이 「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9조(진정의 기각)에 의해 기각 혹은 각하되는 경우라도 의견표명을 통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의해 의견표명을 하였다. 예를 들어, 혹서기에서의 초등학생 경기대회가 아동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견표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학생선수들

표 3. 아동권리위원회 결정사항(총 17건)

결정일자	제목	결정	결정내용
190619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의견 표명	피해구제
190619	혹서기 초등학생 정구대회 개최 관련 의견표명	의견 표명	제도개선
190725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회 출전 제한	권고	피해구제
190827	지도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등	권고	직무(인권) 교육 제도개선
190927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언 및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징계 특별인권교육
200207	학교운동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인권침해	권고	특별인권교육 인권교육
200310	초등학교 ○○부 지도자의 폭언에 의한 학생 선수 인권침해	권고	징계, 제도개선, 인권교육
201022	초등학교 ○○○ 코치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징계, 제도개선, 인권교육, 조사
201022	초등학교 ○○○○ 코치의 학생 성추행 방조 및 폭행 등	권고	징계, 인권교육, 보호조치, 제도개선
201117	체육전문고등학교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권고	징계
201117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언, 과도한 훈련 등에 의한 선수 인권침해	권고	징계, 직무교육 제도개선
210119	중학교의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제도개선
210119	중학교 체육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언 및 체벌	권고	징계, 인권교육
210119	중학교 운동부의 폭력 피해 선수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인권교육, 특별인권교육 제도개선
210525	중학교 ○○부 감독의 학생선수 폭행	권고	경고, 인권교육
210225	고등학교 교사들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권고	기관경고, 인권교육
210713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	의견 표명	제도개선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결정일자 표기: YYMMDD)

을 위한 원거리 기숙사가 다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되어 기숙사 이용을 기대한 진정인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보호하고자 한 바 있다.

4.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은 주로 성폭력 사건들임에 따라 지속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고, 권고 또한 고발이나 징계 등 강력한 조치들이 검토되었다. 특히 직장 내 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처리 절차 미흡,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세밀한 제도개선 조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특히 진정 사건 중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와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경찰과 검찰로 이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특조단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회복과 법률상담을 지원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여성가족 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체계를 활용하여(국가인권위원회, 2021a) 법률, 심리지원 등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은 장애인 선수가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심의·의결하였다. 이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확보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만큼 징계를 권고하고, 직장 내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검토되었다.

스포츠 인권 의식의 증진

1. 의식전환 캠페인

특조단은 스포츠 분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권

표 4.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사항(총 3건)

결정일자	제목	결정	결정내용
191226	대학교 운동부 감독의 선수에 대한 성희롱 등	권고	고발, 징계
200702	학교 기숙사에서의 선수 간 성폭력	권고	고발
210520	○○ 지도자 간 성희롱 및 소속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 등	권고	인권교육 제도개선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결정일자 표기: YYMMDD)

표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사항(총 2건)

결정일자	제목	결정	결정내용
200420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에 비하 발언 등	권고	징계 인권교육
201020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 등	권고	징계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결정일자 표기: YYMMDD)

침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스포츠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먼저 운동하는 과정의 즐거움과 보람을 부각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생선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권먼저, 즐거워야 스포츠다」 등 메인 캠페인 영상 2편과 경기장 상영용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메인 캠페인 영상은 온라인에서 총 430만명 이상의 시청을 기록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또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추진된 ‘스포츠인권 선서’는 2019년 12월 13일, 스포츠인권 명예 대사로 위촉된 미국 프로야구 류현진 선수와 ‘스포츠인권선서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알리는 사진·영상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선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www.savethesports.org)를 운영하고, 대규모 운동경기가 열리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캠

페인과 상담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 시즌3까지 캠페인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2019년 2,400여명, 2020년 3,600여명, 2021년 4,100여명으로 해마다 선서 참가자가 증가하였고, 누적 인원은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2. 인권교육 및 심포지엄

특조단은 2019년 7월 1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 대학교 학생선수 전수조사와 더불어, 102개 대학 7,073명을 대상으로 총 99회에 걸쳐 스포츠인권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강의형 인권강의보다 참여형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9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쇼트트랙·스피드 등 빙상 국가대표 및 실업팀 73명(여성 선수 28명, 남성 선수 4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제1회 스포츠인권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는 빙상종목 대표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엘리트 선수로서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듣고, 쓰며’ 자신의 경험을 인권적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교체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 증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대전에서 ‘전국체육교사 인권 캠프’를 개최하여 40명의 교사가 참가했으며, 다양한 주제에 걸쳐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2020년부터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집합 대면 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용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인 “스포츠 인권, 리스펙트에서 다시 시작!”을 주제로 동영상 6편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게시하였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바라보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강연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를 총 8편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한편, 2020년 11월 26일과 12월 10일 두 차례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캠프’를 개최하여 2개 학교 45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2020년 12월 9일에는 “스포츠인권,

꽤리다임 전환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스포츠인권정책 심포지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3. 인권의식 전환 콘텐츠

특조단은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현장에서 쉽게 인권의식 고취 및 신고 절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다. 우선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웹툰 캐릭터 ‘유미와 세포들’을 활용한 포스터 제작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체육 관련 단체 3,500여 곳에 배포하였고, 스포츠인권 관련 카드 뉴스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다. 이외에도 ‘스포츠 인권 안내서’, ‘스포츠인권 리포트- 합숙소 앞에 멈춰 선 인권’,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 배포하였다. 한편, 특조단은 운동선수로서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 관련 사진 및 영상전을 2019년 11~12월 대한상공회의소, 지하철 역사 등에서 3차례 개최하였다. 이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통해 대중에 스포츠인권 보호·증진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관람 기간 중 총 2,700명이 전시장을 방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4.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019년 2월 25일 특조단 출범을 시작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는 2년간 총 12번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특조단의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추후 운영방향에 대한 세밀한 자문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재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내부 정문자 상임위원이, 외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그리고 체육계를 망라한 16명의 자문위원이 사안에 따라 수시 자문을 통해 특조단의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2019년 상반기 활동으로는 2019년 2월 25일, 3월

19일, 4월 23일, 6월 18일, 네 번의 자문회의를 통해 특조단 설립 이후 주요 업무계획 및 방향 관련 사항,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실태조사 계획(안) 표본 대상 수 관련 사항, 인권보호체계 직권조사 관련 사항, 전국소년체육대회 학부모 설문조사 관련 사항, 스포츠 인권 홍보활동 사항 등을 자문하였다. 2019년 하반기는 2019년 8월 20일, 10월 15일, 12월 17일, 세 번의 자문회의를 통해 스포츠인권 캠페인 기획 경과 및 향후 계획, 실태조사 진행 경과, 운동선수 합숙소 실태 조사 경과 및 결과, 초·중·고학생, 대학, 실업 운동 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추진 결과 사항 등에 대해 검토 및 자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출범 당시 특조단의 운영 기간이 1년임에 따라 1년 단위로 위촉되던 자문위원들은 특조단의 활동 연장이 결정되면서 2기의 형태로 일부 변화를 맞이하였다. 2기 자문위원장은 1기와 마찬가지로 정문자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사임 위원들을 제외하고, 김민호 비상임 위원과 체육계에서 김승겸, 서정화 등 세 명의 자문 위원이 추가로 위촉되었다. 2020년 전반기에는 2020년 2월 12일, 4월 24일, 6월 26일, 세 번의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차기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차기 특조단의 활동 논의 등이었으며, 하반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2020년 9월 22일, 한 차례 자문위원회를 통해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및 스포츠경기대회 모니터링 추진사항과 스포츠인권 홍보 추진사항 논의 등을 자문하였다. 이후 2021년 2월 16일 학교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와 2021년 스포츠경기대회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자문을 끝으로 자문 활동을 종료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a).

구제 및 보호 업무의 평가와 과제

1 구제 및 보호 업무의 성과

특조단은 진정 및 상담창구 운영에 있어서 학생선수들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SNS의 활용, 24

시간 대응체계,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군 파악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인권침해 구제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상 법률지원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법률, 심리, 취업 지원까지 확대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상담 및 진정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험적인 업무 모델이 빠르고 구체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권침해 구제 역량과 더불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자문, 그리고 조사단 직원들의 전문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업무 모델은 인적자원의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엄중한 방역상황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기반 교육 내용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인식개선을 도모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방식에 있어서 기존 강의형 내용을 지양하고, 각 상황에 대해 권리 당사자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각 영상 조회 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립된 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사례로 볼 수 있다. 매년 제공되는 스포츠인권 영상이 누적됨에 따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응할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다.

특히, 스포츠인들의 과도한 경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이 참여자 1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스포츠 현장에 깊게 뿌리내린 승리지상주의 문화를 넘어 스포츠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2. 구제 및 보호 업무의 한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된 특조단은 그 본연의 임무인 신뢰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스포츠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상시 조직으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인권 보호 체계의 확립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건 처리 시 관련 기관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체육계의 온정주의적 태도가 인권침해 구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활용을 주문하였고,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제1차 권고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스포츠인권 구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권고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범 및 운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의 본래 취지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또한 문체부 산하의 형태가 아니라 미국 safe sports를 모델로 한 독립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 당시 문체부 산하인 관계로 독립성 문제가 지적되었고, 신설 조직으로 사건조사의 전문성 부족, 사건 처리 지역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에 따른 초대 이사장의 조기 사퇴 등 총체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설립 의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한편 특조단은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태생적 문제도 안고 있었다. 1년 단위 운영 연장 협의를 바탕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특조단은 매년 연말에는 조직연장을 위한 행안부, 국회, 기재부 등과의 협의에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차기 년도 예산과 조직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했다. 또한 특조단의 운영연장을 위한 여러 지표나 성과 요소들이 불명확한 것은 물론 성과가 표면화되기 어려운 업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인권 보호체계 및 조직 안정성 확보라는 특조단의 과제는 국회나 행안부, 기재부 등에 조직의 유지를 위한 당위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인권위가 아닌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2023년 특조단의 활동이 종료되면 스포츠인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은 사실상 스포츠윤리센터 만이 스포츠인권 구제 조직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3. 스포츠인권 구제, 보호, 증진을 위한 과제

1) 범국가적 조직의 상설화

스포츠인권의 구제, 보호 및 증진 업무는 한국 사회 스포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제기구의 상설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특조단과 같이 한시적 기구로는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20년 출범한 상시 조직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첫째, 스포츠인권과 스포츠비리 문제를 모두 조사하면서 조직의 역량이 분산되는 점, 둘째,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조사 역량 요소들이 비리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 셋째, 구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 넷째, 스포츠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 가능성 문제, 다섯째,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역량 문제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에 있어 문체부의 간섭을 피하기 어려우며, 예산확보와 연동하여 업무 규모가 산출되기 때문에 긴밀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건심의의 독립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인권교육, 인권의식 증진 등과 관련한 업무는 예산 및 전문성 문제로 개선할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인권 문제의 범위도 폭력, 성폭력, 그리고 학습권 침해 문제 이외의 인권증진 요소로 업무 확대를 시도하지 못하는 등 조직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인권 문제와 스포츠비리 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문제에 집중하고, 스포츠혁신위 권고에서 언급된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의 요소들은 스포츠인권 문제에 국한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조사 역량이 축적된 국가기관인 인권위 특조단을 상설화하여 인권침해 구제 기능과 스포츠인권 정책 기능을 전담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위의 경우, 최근 북미, 유럽 등지에서 스포츠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출범과 운영이 확산되고 있고, 인권보호 기관 간의 국제적 공조가 증대되는 가운데 20년 이상 축적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스포츠인권 구제 활동의 법적 근거 강화

특조단의 스포츠인권 관련 사건에 대한 구제 업무는 통상적으로 진정, 조사, 권고 또는 의견표명, 피권고 기관의 권고 이행계획 점검, 권고 이행상황 확인 및 보고, 언론 공표 유무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의 경우 불수용 사례가 거의 없다. 인권위의 권고는 조직의 법적, 사회적 위상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불수용하는 경우 언론 공표를 통해 기관의 인식과 태도를 문제 삼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게 되므로 조직의 건전성이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조단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체육계 등에 권고된 사안의 경우, 불수용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특조단에서 검토하여 권고된 내용들의 경우, 기존 정책 권고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고, 권고 대상에 대해 권고의 내용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권고이행 점검에 있어서 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는 인권위법의 개정을 통해 이행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점검과 대처는 각 조사관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편이 요구된다.

3)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스포츠인권의 인식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스포츠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각 부처나 단체별로 모두 개별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홍보 주체의 통합성, 일관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스포츠인권 패러다임의 전환은 스포츠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과제를 통해 변동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국가가 스포츠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논할 때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역할을 탐색하고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두 편의 시리즈 연구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물에서는 2019년 2월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3년간 수행한 업무들을 스포츠인권침해 실태조사, 직권조사, 정책 권고, 이행점검을 포함한 진단과 정책 중심으로 다루었다(김현수, 홍덕기, 2022). 본 연구는 그 두 번째 연구물로, 특조단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인권침해 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사건의 진정 및 조사절차, 사건에 따른 인권위 내 각 위원회의 의

사결정과 구제 절차, 스포츠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인권교육, 심포지엄, 영상 콘텐츠, 자문위원회 등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구제 및 보호 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제시했다.

특조단은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스포츠인권현장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업무를 끝으로 2023년 2월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특조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특조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여러 측면에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조단의 해체는 아쉽게 여겨진다.

1970년대 국가 주도로 시작되었던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성과 이면에 드러난 인권침해 사안들은 대상과 종목만 달리하여 지금 이 시점에도 반복되고 있다(임용석, 홍덕기, 2021). 드러난 사건 이면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내려 했던 2019년 혁신위의 권고도 정권이 바뀌며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 자정작용을 주도해야 할 대체육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소수의 스포츠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만으로는 스포츠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김현수, 홍덕기, 2022; 홍덕기, 임용석, 2021). 특조단의 활동에서 살펴봤듯이, 한 국가의 스포츠 정책이 어떤 기조와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근 들어 정기적인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와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등을 통해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향후 스포츠인권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스포츠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축소되거나 엘리트스포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왜곡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스포츠인권을 단지 폭력, 성폭력, 학습권 등에 한정하는 정책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김현수, 2021; 홍덕기, 2021).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권리라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21a).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백서 2019-202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1b).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 7. 6.). **스포츠계 인권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19직권0001700).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1. 1. 27.).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20직권0001100)
- 김현수(2020).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8 (3), 67-83.
- 김현수(2021). **인권과 스포츠**. 서울: 노사이드.
- 김현수, 박성주(2020).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과 개선방향: 학습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5), 13-30.
- 김현수, 홍덕기(202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I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진단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1(4), 323-342.
- 대한체육회 보도자료(2022. 08. 29).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제검토 및 개선책 마련 발표에 적극지지**. 서울: 대한체육회.
- 류태호(2005).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91-108.
- 안민석, 홍덕기(2019). **스포츠인권백서: 언론보도를 통해 본 스포츠 반(反)인권 사례모음**. 국회 의원 안민석 의원실 정책자료집.
- 임용석, 홍덕기(2021).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57-76.
- 홍덕기(2020).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국사회 스포츠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9(2), 285-302.
- 홍덕기(2021).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 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23-52.
- 홍덕기,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31-154.
- 홍덕기, 임용석(2021).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0(5), 81-100.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